

미국인에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3천불 기준 관련 문의

- Q** 미국인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 5천불인 경우
1. 조세조약에 따라 연간 3천불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및 지방소득세) 22%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때 22%의 세율을 총 지급액인 5천불 전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3천불 초과분인 2천불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항공료 실비를 추가로 미국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지급액에 포함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A**
1.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액에 22% 이므로, 전체 5천불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항공료 실비 등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중식비 소급 지급시 비과세 가능 여부

- Q** 중식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7월에 1~6월분의 중식비 인상금액 10만원*6개월 = 60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면 해당 금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 식대 비과세항목은 월별금액 기준이므로 일괄 소급적용은 안되며, 소급 적용하려면 상반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장기렌트관련 문의

- Q** 법인차량 장기렌트(5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법인차량 월 렌트료 계정과목?
 2. 월렌트료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유.무? (7인승카니발)
 3. 연간 경비처리 한도액? (렌트비,유류대,수선비등)
- A**
1. 렌트료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매월 렌트료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취득 및 유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차량이 1,000cc 미만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용차량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연간 경비처리는 전체운행거리에서 실제로 업무용으로 운행거리만큼의 비율대로 경비처리(운행기록작성)가 가능하며,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연 1천5백만원이 한도입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외국인 연말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9월에 퇴사한 외국인 직원으로 2021년 7월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직원에게 지급 한 후 본인에게 지급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지급액 대하여 해당 귀속분의 원천세 신고 및 소득세 납부도 정상 완료 하였습니다.

이 외국인 직원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기에 근무한 직장에 이 추가 소득에 대하여 전달하지 않았고, 이 회사도 외국인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내국인 연말정산과 달리 외국인 연말정산은 본인 비용이 아닌 회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종전 회사의 추가 소득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하지 않고 종전 회사의 소득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추가 소득을 2021년 연말 정산때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가산금 통지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한 외국인 직원 및 당시 외국인이 근무한 회사는 추가 소득에 대한 가산금을 저희가 소득 원천지이므로 가산금의 반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말 정산때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저희가 가산금의 반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연말정산오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나, 직원이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귀사가 퇴직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된 오류라면 귀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산금에 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